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 - 182
----------	---------

제출연월일 : 2000. 1.

제 출 자 : 백수호 의원의 6인

1. 주 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승인에 다른 구 우신운수 소속기사에 의한 시장실 방화분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동두천시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6인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 활동은 2000년 2월 16일까지 한다

2. 제안이유

- 1월 26일 구 우신운수 소속 택시기사(4명)의 시장실 방화 분신에 따른 사상자발생한데 대하여 피해상황 및 구 우신운수 - 미래교통으로의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승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여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관련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특별위원회의 설치)
- 동두천시위원회조례 제2조 1항(특별위원회)
-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 운영계획안 별첨